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vpass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410호 (여의도동, 동북빌딩)
(전 화) 02-761-7649

대 표 이 사 : 윤 종 업, 김 봉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성 희 (전 화) 02-761-7648

작 성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유 아 름 (전 화) 02-761-764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9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17비합60)
2. 원고·신청인	신청인: 벨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사건본인: (주)아트라스비엑스
3. 판결·결정내용	소송 취하
4. 판결·결정사유	(주)아트라스비엑스의 임시주총 소집요구 수용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 12. 18.
7. 확인일자	2017. 12. 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건본인 (주)아트라스비엑스가 2017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신청인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소를 취하함. (참고: 2017. 10. 25. 주주총회 소집청구 소송신청)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4)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 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